

# 「전북형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」

## 신기술 활용 지역현안해결 콘텐츠 개발

### 제작지원사업 모집공고문

(재)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「신기술 활용 지역현안해결 콘텐츠 개발 제작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5. 4. 14.

(재)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

#### 1

#### 사업개요

- 사업명: 신기술 활용 지역현안해결 콘텐츠 개발 제작지원사업
- 사업목적
  - 신기술 활용 콘텐츠 개발로 도내 콘텐츠기업 역량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
  - 신기술을 활용한 지역현안해결 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도모 및 도민 신기술 콘텐츠 체감 기여
- 사업기간: 협약체결일로부터 ~ 2025. 11. 30.
- 지원내용

구분	세부내용			
1	지원대상	-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·외 콘텐츠기업 ※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이후 2개월 이내 본사 이전 필수		
		- 신청일 현재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명 이상(과제 개발 관련 전문인력 2명 이상) 기업		
2	지원규모	선정평가 순위에 따른 상위 2개 과제 (과제당 최대 80백만원)	선정평가 순위에 따른 하위 2개 과제 (과제당 최대 70백만원)	
3	지원내용	- 콘텐츠 제작 직접비 지원(인건비, 운영비, 용역비 등)		
4	지원조건	상용화	- 협약기간 내 콘텐츠 제작을 완료하며 '25년 12월 이내 상용화 추진	
		신규고용	- 과제당 2명 이상 신규고용 必	
		자부담금	- 총사업비의 10% 이상 자부담금(현금) 편성 의무	
5	유의사항	- 본 사업은 「글로컬대학30」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「지역 특화 소재 활용 융복합 교육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」과 중복 지원은 가능하나, 최종 선정 시 1개의 과제만 운영할 수 있음		

## ○ 지원개요

구분	세부내용	
규모	선정평가 순위에 따른 상위 2개 과제 (과제당 최대 80백만원)	선정평가 순위에 따른 하위 2개 과제 (과제당 최대 70백만원)
- 중소기업: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에 해당하는 기업		
지원대상	-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·외 콘텐츠기업 ※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이후 2개월 이내 본사 이전 필수	
-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명 이상(과제 전문인력 2명 이상 보유) ※ 위 사항은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		
지원자격	[도내기업]	[도외기업]
	- 도내 사업장 소재지 콘텐츠 기업(본사)	- 도외 사업장 소재지 콘텐츠 기업
	- 도내기업 지사는 지원 불가	-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 본사 이전 필수
	-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	-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
지원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기술*을 활용 지역현안해결(인구감소, 경제활성화 등) 콘텐츠 개발**</li> <li>* AI, 3D, 프로젝션 맵핑, 아나몰픽, XR, 홀로그램, 4DX, NFT 등</li> <li>** 콘텐츠산업 전 분야(애니메이션, 캐릭터, 방송, VR, AR, 융복합 공연 등)</li> </ul> <p>(예시1) XR, 미디어아트 등 활용 관광 유인 콘텐츠 개발(지역 경제 활성화 대응)</p> <p>(예시2)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감성 챗봇 콘텐츠 개발(고령화 문제 대응)</p>	
업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자등록증상 지원분야에 적합한 업태(종목)가 등록된 콘텐츠기업 또는 콘텐츠산업으로 사업영역 확장 목적을 가진 기업</li> <li>※ 게임 및 단순 예술, 창작 분야 지원 불가</li> </ul>	
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제40조제1항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</li> <li>- 본 사업은 「글로컬대학30」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「지역 특화 소재 활용 융복합 교육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」과 중복 지원은 가능하나, 최종 선정 시 1개의 과제만 운영할 수 있음</li> <li>- IP(지식재산권) 사용시 사용계약서, 가산점 적용시 확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 제출</li> </ul>	
- 컨소시엄 불가(용역비로 편성 가능)		
개발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협약기간(협약일 ~ 2025. 11. 30.) 내 콘텐츠 제작을 완료하며 '25년 12월 이내 상용화, 서비스 런칭 필수</li> </ul>	
지원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총 사업비의 10% 이상 자부담금(현금) 편성 의무</li> <li>※ (예시) 총 사업비 및 자기부담금 10% 이상 계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원금 80,000,000원(90%)×자기부담금 8,890,000원(10%)=총 사업비 88,890,000원</li> <li>· 지원금 70,000,000원(90%)×자기부담금 7,780,000원(10%)=총 사업비 77,780,000원</li> </ul> </li> <li>- 지자체 보조금(지방비) 매칭 불가(지자체 보조금을 사업비에 직접 편성할 수 없음)</li> <li>※ 자부담금 비율은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음</li> </ul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규인력 2명 이상의 고용必</li> <li>※ 3개월 이상 고용 유지</li> </ul>	
보증보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확정된 지원금에 대한 이행(지급)보증보험 발행</li> </ul>	

**<진흥원 지원 제한사항>**

-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주관기업과 참여기업, 대표자 및 책임자
- **신청일 현재, 5천만원 이상(공고금액 기준)의 과제가 연 2회 이상일 경우**
  - 당해년도 보조(지원)사업에 지원 불가
- **신청일 현재, 우리 원에서 1.5억원 이상(공고금액 기준)의 과제를 3년 연속으로 수행한 경우**
  - 향후 1년간 보조(지원)사업에 지원 불가
- **신청일 현재, 우리 원에서 2년간 수혜받은 보조금(지원금)의 총 금액이 6억원(공고금액 기준)을 초과한 경우**
  - 향후 2년간 보조(지원)사업에 지원 불가      ※ 상기 제한사항 외에도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
○ 추진절차 및 일정   ※ 상기 절차는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구분	내용	시기
사업공고/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 모집공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전 서류 및 적합성 검토</li> </ul> </li> <li>- 이메일 신청접수(sleki0317@jcon.or.kr)</li> </ul>	4. 14.(월) ~ 5. 9.(금) 5. 2.(금) ~ 5. 9.(금) 16:00 까지
▼		
서류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류평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모집 수에 따라 평가일정 및 방식 변경될 수 있음</li> </ul> </li> </ul>	5. 16.(목)
▼		
선정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발표평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선정기업 예산적정성 검토 및 예산확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모집 수에 따라 평가일정 및 방식 변경될 수 있음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5. 22.(목)
▼		
현장점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선정기업 소재지 실태점검 등</li> </ul>	5월 중
▼		
협약체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과제협약 및 1차 지원금 최초 협약시 30% 교부 이후 사업비 지급 상황에 따라 추가교부</li> </ul>	6. 1.(수)
▼		
중간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과제 수행 추진율 중간점검(현장점검 동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평가결과에 따른 2차 지원금 교부</li> </ul> </li> </ul>	8월 중
▼		
결과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콘텐츠 결과물 시연 등 최종평가</li> </ul>	11월 중
▼		
사업정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산/실적보고서 및 회계검토보고서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산잔액 및 이자 반납</li> </ul> </li> </ul>	12월 중

## [용어설명]

- 총사업비: 지원금과 자기부담금(사업자부담금)을 합한 금액
- 지원금: 사업비 중 진흥원장이 주관기업에 지급하는 금액
- 자기부담금: 사업비 중 주관기업이 부담하는 금액(총 사업비의 10% 이상)

## - 관련규정

-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우리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, 지방보조금 운영 매뉴얼에 의거함
- 콘텐츠지원사업 관련 규정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된 문제는 수행기업(주관기업)에게 있음

## - 과제신청 및 관리

- 본 사업의 공모 및 신청·사업관리·집행은 우리 원 시스템을 통해 운영됨

## - 사업비 사용 및 관리

- 지원금은 선정평가 결과 및 예산심의에 따라 조정·삭감될 수 있음
- 사업비(지원금+자기부담금)는 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에 의거 집행되어야 하며, 과제책임자 또는 대표자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함
- 수행기관은 지원금을 지급 받을 별도의 신규계정(계좌)을 개설해 관리하여야 함  
(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계좌를 활용할 경우 통장 잔고 '0원'인 상태에서 운용해야 함)
- 본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과제 사업비의 부가세는 인정하지 않음
- 지원금 분할지급(최초30% 교부 이후 사업비 지급 상황에 따라 추가교부)

## - 자기부담금 편성 및 집행

- 총 사업비의 10% 이상 자기부담금을 필수 편성해야하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자기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 함

## ※ (예시) 총 사업비 및 자기부담금 10% 이상 계산

- 지원금 80,000,000원(90%)×자기부담금 8,890,000원(10%)=총 사업비 88,890,000원
- 지원금 70,000,000원(90%)×자기부담금 7,780,000원(10%)=총 사업비 77,780,000원
- 2차 지원금 교부 전 사업비에 편성한 자기부담금 미소진 시 2차 교부금(30%) 지급 불가
- 자산취득비의 경우 지원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으로만 편성 가능

## - 일반사항

- 본 사업과 관련된 안내사항은 우리 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
- 협약 이전 또는 이후에 필요할 경우 수행기관 현장점검이 이뤄질 수 있음
- 본 사업과 관련된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협약해지, 지원금 회수,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본 사업 종료 이후 2년간 과제관리·점검 등 사후 성과관리가 진행됨
- 사업비 집행 시 가족,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,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, 위반내용 확인 시 전액 부적정 평가하고 정산 시 환수함
- 참여율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담기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함
- 진흥원 제작지원사업 선정 기업 간 거래 불가

※ 정부출연사업 등 과제 참여율이 100% 초과하는 경우, ※ 이중취업(타 업체 대표 이사 등)에 해당하는 경우

※ 참여인력이 통상적으로 과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

## - 기타사항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에 따라 사업운영에 따라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
-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된 모든 결과물에는 (재)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지원 문구 삽입 권장  
※ (문구 예) 해당 콘텐츠는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.
- 상기 공고 내용은 우리 원 진행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·조정될 수 있음
- 글로컬대학30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지역 특화 소재 활용 융복합 교육 콘텐츠 제작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

## ○ 공고 및 접수

- 공고기간: 2025. 4. 14.(월) ~ 5. 9.(금)
- 이메일 접수기간: 2025. 5. 2.(금) ~ 5. 9.(금) 16:00까지

※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하니 마감시한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○ 문의처 및 접수방법: 담당자 이메일 접수(sleki0317@jcon.or.kr)

- 담당자: 문화콘텐츠사업팀 이슬기 책임(☎ 063)282-3770)
- 진흥원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이메일 접수

\* 접수확인 후 접수증 회신예정, 회신이 없을 경우 2일 이내 접수확인요청

\*\* 마감일 접수의 경우 접수확인 전화문의 요망

## ○ 제출서류

구분	번호	제출서류	제출 유의사항	제출 방식
과제신청서	①	과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	- 안내문 참조	PDF
	②	참여인력 이력		
	③	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		
	④	신규인력 채용계획		
동의서	⑤	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	- 안내문 참조	PDF
	⑥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- 참여인력 자필서명 필수	
	⑦	중복지원 여부 확인서	- 안내문 참조	
필수제출서류	⑧	사업자등록증	-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	PDF
	⑨	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	-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- 제출일 기준 발행 1개월 미만의 것	
	⑩	표준재무제표	- 흠택스 발급 · 3개년(22~24년도) 표준재무제표 · 표준재무제표가 없을 경우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(단, 법정 결산신고 기간을 지키지 않아 표준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)	
기타 서류	⑪	신용평가등급확인서	-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· 미제출 시 평가지표에 따라 기본점수 적용	PDF
	-	기타 증빙서류	- 증빙서류 · 가산점 증빙서류, IP사용 시 사용계약서 등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</li> <li>- 제출된 서류는 우리 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·삭제·대체될 수 없음</li> <li>- 제출서류 내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평가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</li> <li>-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주시기 바라며, 상기 제출서류 이외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 시 최종 사업계획서, 인감증명서(법인), 사용인감계, 지원금 전용 통장사본, 법인등기부등본, 국세/지방세/4대보험 납세증명서, 중소기업확인서, 성희롱·성폭력 방지 등에 대한 서약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됨</li> </ul>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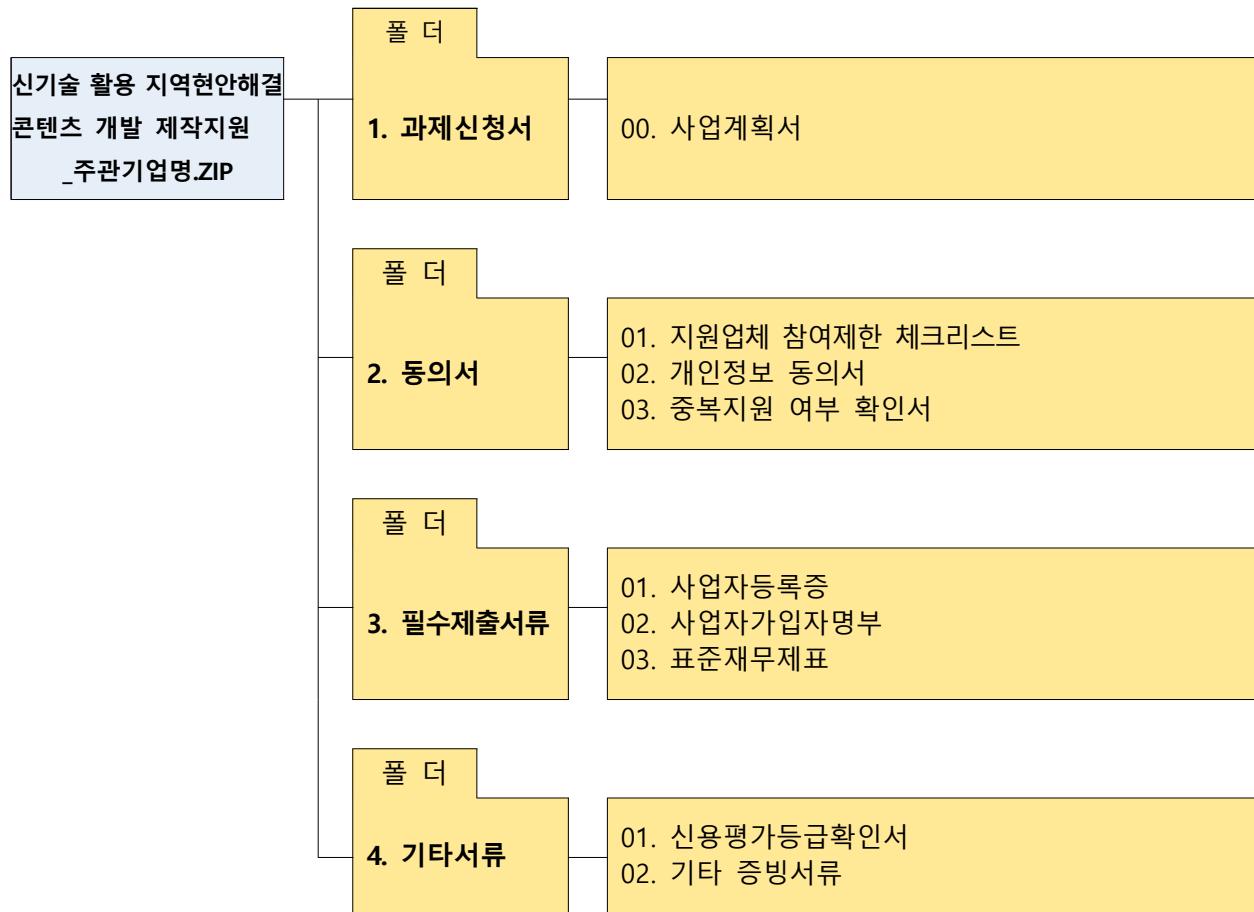
※ 서류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첨부된 사업 안내문 참조

## ○ 서류제출방법

### - 서류 제출방법

- 모든 제출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송부하여야 함
  - 압축파일은 50MB 이하의 용량으로 압축하여 송부
  -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
  - 누락 및 오제출된 서류는 보완·수정이 불가
- 압축파일명: 신기술 활용 지역현안해결 콘텐츠 개발 제작지원사업 주관기업명.ZI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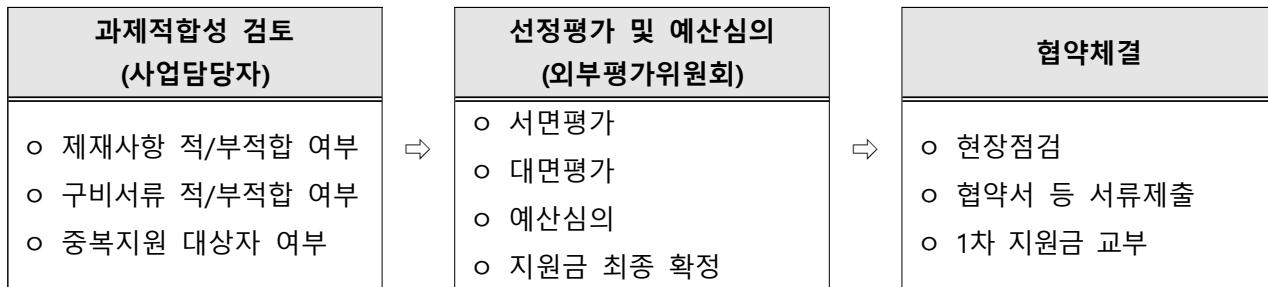
### . 압축폴더트리



## 5

##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

## ○ 선정절차      ※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

- ※ 신청 과제 수가 본 사업 지원 규모(4개)보다 적거나 같을 시, 재공고 가능
- ※ 신청 과제 수가 지원 규모의 2배수 이내(8개 과제 이내)일 경우, 서면평가 생략
- ※ 선정(발표)평가는 별도 **발표자료 없이 제출한 과제신청서 기준**으로 발표 및 평가
- ※ 선정(발표)평가 발표자는 주관기업 대표자 또는 과제책임자에 한함  
(단, 평가과정에 기업 대표자 동석 필수/ 대표자 불참 시 탈락 처리)

## ○ 사업평가(안)

구분	평가사항	평가결과
①	서류평가	사전 적합성 검토 진행 후 서류평가 모집단위의 2배수 선발
②	발표평가	발표평가 및 질의응답, 예산심의 사업비 확정 및 현장점검 기업 대상 선정
③	현장점검	사업장 유무, 근무환경, 참여인력 등 최종 선정기업 협약체결
④	중간평가	수행과제별 진척률 점검 2차 지원금 교부
⑤	결과평가	과제 최종 수행점검(시연 등) 사업정산

- 심사위원 구성: 산·학·연·관 전문가 7명 내외 구성

## ○ 평가기준(안)      ※ 평가지표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

- 사업적합성 검토

구분	검토사항	평가
①	제재사항	- 진흥원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(※별표 참조)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②	구비서류	- 과제신청서 및 필수제출서류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③	중복지원	- 중복지원 대상자 여부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
## - 서류평가 평가지표

-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전반적인 과제 내용 평가
  - 심사위원별 평가점수(정량정성) 중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총합의 산술평균 점수에 가점 및 감점 적용하여 평가점수 산출
  - 평가결과 70점 이상 과제 ‘적합’, 70점 미만 과제 ‘부적합’ 판정
  - ‘적합’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하여 대면평가
- (모집규모 2배수 / 8개 과제 내외 선정)

평가항목	세부항목	검토사항	배점
수행기관 (20)	수행관리체계	-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	20
	기업전문성	- 콘텐츠 제작 전문성 확보 및 참여인력 과제 수행가능 여부	
사업비 (20)	사업비 규모	-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	20
	사업비 조달계획	- 실제 소요 자부담금 조달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	
과제기획력 (30)	과제이해도	- 목표 시장 및 과제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	30
	기획독창성	- 기획된 과제의 차별성과 참신성	
	기획완성도	- 기획안의 구체성, 현실성 확보 여부	
과제내용 (30)	경쟁력	- 시장의 타 콘텐츠와 경쟁하여 우위에 있는 정도	30
	기여도	-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대한 기여도 및 일반 대중 체감 정도	
	상용화 구체성	- 세부적인 상용화 계획(플랫폼 활용 등)	
합 계			100

### - 발표평가 평가지표

- 별도 발표자료 제출 없이 제출서류(과제신청서 등)를 통한 발표평가
- 과제별 20분(발표 10분/질의응답 10분) 평가
-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총합의 산술평균 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산출
- 평가결과 70점 이상 과제 ‘적합’, 70점 미만 과제 ‘부적합’ 판정
- 최종 선정과제는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최종 선정과제 고득점 순으로 상위 2개, 하위 2개 과제 차등지원
- 동점 발생의 경우 정성평가 과제내용(40점) 점수 고득점 순으로 지원

구분	평가항목	평가지표					배점			
정량 평가 (5)	재무안정성 (5)	구분	회사채	기업어음	기업신용평가등급	배점	5			
		신용평가 등급	AAA, AA+, AA0, AA-A+, A0, A-, BBB+, BBB0	A1, A2+, A20, A2-, A3+, A30	AAA, AA+, AA0, AA-A+, A0, A-, BBB+, BBB0	5				
			BBB-, BB+, BB0, BB-	A3-, B+, B0	BBB-, BB+, BB0, BB-	4				
			B+, B0, B-	B-	B+, B0, B-	3				
			CCC+ 이하	C 이하	CCC+ 이하	2				
수행 기관 (30)	기업전문성	- 콘텐츠 관련 기술 보유 등 기업 전문성 확보 여부					30			
	기업역량	- 유사 과제 수행 및 시장 성공 경험								
	추진의지	- 수행책임자의 과제 수행 의지, 각오								
정성 평가 (95)	과제 내용 (40)	기획우수성	- 지역현안해결 콘텐츠로서 기획된 과제의 차별성과 독창성					40		
		기획완성도	- 제작을 위한 기획개발의 구체성과 질적 완성 수준							
		과제경쟁력	- 시장의 타 콘텐츠와 경쟁하여 우위에 있는 정도							
기대 성과 (25)	기대 성과 (25)	사업화	- 과제 결과물의 사업화 및 2차 콘텐츠 발전 가능성					25		
		투자가능성	- 기대되는 매출규모 및 투자유치 가능성							
		경제적성과	- 상용화 계획을 통해 기대되는 콘텐츠 소비·향유 정도							

##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(제40조제1항관련)

제재대상 사유(위반행위 유형)	제재조치(처리기준)
<p>1. 보조금(지원금)을 지원받은 <b>민간단체</b>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(지원금) 횡령</p> <p>가.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</p> <p>나.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</p>	<p>가. 수사기관에 고발조치, 횡령액 반환조치,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(지원)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</p> <p>나.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(지원)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</p>
<p>2. 보조금(지원금)을 지원받은 <b>민간단체의 임직원</b>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</p> <p>가.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</p> <p>나.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</p>	<p>가. 수사기관에 고발조치, 횡령액 반환조치,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(지원)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, <b>해당자 자체징계 요구</b></p> <p>나.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(지원)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, <b>해당자 자체 징계 요구</b></p>
<p>3. 보조금(지원금)을 지원받은 <b>민간단체 또는 민간 단체의 임직원</b>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(지원금) <b>유용</b></p>	<p><b>제1호 및 제2호</b>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하되,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</p>
<p>4.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(지원금)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,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(지원금)을 사용한 경우</p>	<p>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(지원)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</p>
<p>5. 정산결과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</p>	<p>향후 2년 이내 당해 단체 또는 보조(지원)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</p>
<p>6. 위조·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보고 시 제출한 경우</p>	<p>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(지원)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</p>
<p>7.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</p> <p>가.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</p> <p>나. 교부(지원)조건을 위반한 경우</p> <p>다.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</p> <p>라. 기획재정부의 예산·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</p>	<p>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,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(지원)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(지원금) 기준으로 50%이상 2회 감액 지원</p>

##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(제40조제1항관련)

제재대상 사유(위반행위 유형)	제재조치(처리기준)
<p>8. 제4조 제3항의 민간단체가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</p> <p>가. 5천만 원 이상의 과제가 연 2회 이상일 경우</p> <p>나. 1.5억 원 이상의 과제를 3년 연속으로 수행한 경우</p> <p>다. 2년간 보조금(지원금)의 총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 경우</p>	<p>가. 당해 단체 또는 보조(지원)사업에 지원 불가</p> <p>나. 향후 1년간 단체 또는 보조(지원)사업에 지원 불가</p> <p>다. 향후 2년간 단체 또는 보조(지원)사업에 지원 불가</p>
<p>9. 기타 제재대상 사유(위반행위 유형)</p> <p>가. 외부압력, 허위,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</p> <p>나. 수행계획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,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</p> <p>다.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극히 “불량” 인 경우 (다만, 지원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)</p> <p>라.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,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</p> <p>마.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계을리 한 경우</p> <p>바.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</p> <p>사. 지원사업을 수행한 민간단체가 해당 과제에 대한 행정적 시정 및 권고, 지적의 조치 등의를 받거나, 사후 관리가 극히 불량인 경우</p> <p>아. 그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</p>	<p>가.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</p> <p>나.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</p> <p>다.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</p> <p>라.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</p> <p>마. 기술료 해당액 환수</p> <p>바.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</p> <p>사. 향후 5년간 보조(지원)사업에 지원 불가</p> <p>아. 지원금 전액 또는 잔액 환수</p>

※ 상기 8호, 9호의 사유별 제재 조치 및 처리는 '20년 1월 1일부로 시행. 단, 8호는 최근 2년 실적을 소급하여 적용.

※ 보조금(지원금)이라 함은 제2조에 따라 칭하는 모든 성격의 재원을 뜻함. (단, 8호에 한하여 칭하는 보조금(지원금)은 진흥원이 직접 지원한 보조금에 한함.)